교육과정 운영 규정

제정 1999. 6. 27. 제31차 개정 2025. 8. 11.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상지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 학칙」에 따라 대학이념, 인재상 및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[전부개정 2018.10.18.]
- 제2조(교육과정의 구분 및 정의) ① 교육과정은 본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및 학습에 관한 종합적인 활동을 말하며, 교과과정 및 비교과과정으로 구분 하다.
 - ② 교과과정은 학점을 부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, 다음 각 호의 전공교과와 교양교과로 구분한다. (개정 2024.7.30.)
 - 1. 교양교과는 대학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의 교육목표, 인재상 및 FIND핵심역량을 실현하기 위해 개설한 교과목(전공 이외)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25.8.11.)
 - 가. 교양필수 : 교양교과목 중 졸업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(개정 2021.7.15.)
 - 나. 교양선택 : 교양필수 이외에 선택 가능한 교과목 (개정 2021.7.15.)
 - 2. 전공교과는 학과(부)에서 소속 학과(부)생들을 대상으로 개설하는 전공교육에 필요한 교과 목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성한다.
 - 가. 전공필수 : 소속 학과(부)생이 갖추어야 할 전공능력을 교육목표로 하고 모든 소속 학과(부)생이 졸업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(개정 2021.7.15.)
 - 나. 전공선택 : 소속 학과(부)생이 갖추어야 할 전공능력을 교육목표로 하고, 모든 소속 학과(부)생이 선택 가능한 교과목 (개정 2021.7.15.)
 - 3. 학과(부)에서는 전공교과목 이외에 전공에 필요한 교과목을 다음 각 목으로 구성한다. (신설 2021.7.15.)
 - 가. 계열(학부)기초 : 전공교과 이수에 필요한 학문의 기본개념과 탐구방법을 익히는 교과 목 (신설 2021.7.15.)
 - 나. 계열공통 : 계열별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이 학과 배정 이전에 이수하는 교과목 (신설 2021.7.15.)
 - ③ 비교과과정은 본교 교과과정 이외에 별도로 개설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과정으로 교

과과정을 보완하고 우리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하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 (개정 2019.9.11., 2021.7.15., 2023.12.14., 2024.7.30.)

- 1. 삭제(2019.9.11.)
- 2. 삭제(2019.9.11.)
- 3. 삭제(2019.9.11.)
- 4. 삭제(2019.9.11.)
- 5. 삭제(2019.9.11.)
- 6. 삭제(2019.9.11.)
- 7. "비교과 프로그램"은 본교 비교과 운영부서와 학과에서 내부계획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교육프로그램(방학중 활동 및 동아리 포함)을 말한다.
- 8. "비교과 활동"은 학생 스스로 수행한 활동 중 비교과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활동(개별 봉사활동, 해외연수, 어학시험 등)을 말한다.
- 9. 부서에서 운영하는 비교과과정은 FIND핵심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, FIND핵심역량 기반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편성함으로써 비교과 과정의 유기적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FIND핵심역량 기반 비교과과정 분류 체계(별표1)와 같이 분류한다. (개정 2025.8.11.)
- 10. 학과(부)에서 운영하는 비교과과정은 FIND핵심역량과 해당 학과(부)의 전공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.
- ④ 일반선택교과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. (개정 2024.7.30.)
- 1. 교직 : 교원자격(중등 2급 정교사 자격)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목
- 2. 일반선택 : 교양교과 및 소속 학과(부)에서 제공하는 전공교과 이외의 타 학과(부)에서 개설된 전공교과 가운데에서 선택하여 이수하는 교과목을 말한다.
- 3. 기타교과목 : 학생군사교육단 관련 교과목(안보학 등) (개정 2022.6.8.)
- ⑤ 편성과목이란 교과과정에 등재된 교과목을 말하며, 개설과목이란 편성과목 가운데에서 학년(의) 학기별로 개설되는 교과목을 말한다. (개정 2024.7.30.)

[전부개정 2018.10.18.]

[조명변경 2018.10.18.]

- **제3조(편성방향)** ①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표, 인재상, FIND핵심역량 및 전공능력을 반영하여 편성한다. (개정 2024.7.30., 2025.8.11.)
 - ② 최신의 학문적 동향과 산업계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한다. (개정 2024.7.30.)
 - ③ 전공 교육과정은 학과(전공)별로 본교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과 연계된 전공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전공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전공능력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편성한다. (개정 2024.7.30., 2025.8.11.)
 - ④ 교양 교육과정은 본교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 구현을 위한 FIND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지

- 식체계의 균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편성한다. (개 정 2024.7.30., 2025.8.11.)
- ⑤ 창의적인 인재양성 및 수요자 중심의 융합형 전공교육을 위해 학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.

[전부개정 2018.10.18.]

[조명변경 2018.10.18.]

- **제4조(FIND핵심역량)** 상지 교육혁신 모델 FIND핵심역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24.7.30.)
 - 1. 응용역량 : 취창업과 생활경제에 구체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현장교육 중심의 역량
 - 2. 통합역량 : 학습자 개인마다의 고유한 융복합 능력을 키우는 통섭교육 중심의 역량
 - 3. 소통역량 : 글로벌 표현역량과 지역협동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공감교육 중심의 역량
 - 4. 자기발견역량 : 행복한 인생을 디자인하는 자기동기 발현교육 중심의 역량 [본조신설 2018.10.18.]

[제목개정 2025.8.11.]

- **제5조(교육과정 개발 및 환류)** ① 전공교육과정은 본교 및 학과(부)의 교육목적, 교육목표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전공능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. (개정 2024.7.30., 2025.8.11.)
 - 1. 각 학과(부)는 소속 학과(부) 및 전공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과(부) 특성에 맞게 교육목적, 교육목표, 인재상 및 전공능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. (개정 2025.8.11.)
 - 2. 각 학과(부)는 전공능력기반 전공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한다. (개정 2025.8.11.)
 - 3. 전공능력기반 전공교육과정은 학과(부)의 교육목적, 교육목표 및 인재상과 연계되도록 설정한다. (개정 2025.8.11.)
 - 4. 각 학과(부)의 전공능력은 다음 각 목을 반영하여 영역별로 설정한다.
 - 가. 산업계 및 사회적 요구 분석, 내외 환경 분석, 학문 동향 분석, 교육 수요자 요구 조사, 졸업생 진로 분석 등의 연구 결과 반영
 - 나. 진로 분야에 대한 직무 분석 결과 반영
 - 5. 각 학과(부)는 전공의 체계적인 학문계통도와 전공 내 진로 분야별 학습로드맵을 설정한다.
 - 6. <mark>전공교육과정</mark>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환류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한다. (개정 2025.8.11.)
 - 가. 전공교과과정에 대해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차기 교육과정 개편 시 반영 (개정 2025.8.11.)
 - 나.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(개정 2025.8.11.)
 - 다. 설문조사 및 요구분석을 통해 전공교육과정 개발 시 교육수요자의 의견 반영 (개정

2025.8.11.)

- 7. 전공교육과정의 환류를 위해 학과(부)에서는 매 학년도 1회 이상의 학과(부)별 교원 워크 숍과 학생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정 만족도 및 요구조사를 실시한다. (개정 2025.8.11.)
- 8. 삭제 (2025.8.11.)
- 9. 삭제 (2025.8.11.)
- ② 교양교육과정은 본교의 교육목적, 교육목표 및 FIND핵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. (개정 2024.7.30., 2025.8.11.)
- 1. 대학의 교육목적, 교육목표 및 인재상에 부합하도록 교양교육과정을 개발하고, 각 교과목 별로 FIND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을 설정하며, 설정된 연계성은 수업계획서 등에 표시한다. (개정 2025.8.11.)
- 2. 교양교육과정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환류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한다. (개정 2025.8.11.)
 - 가. FIND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과정 환류체계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차 기 교육과정 개편 시 반영 (개정 2025.8.11.)
 - 나.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(개정 2025.8.11.)
 - 다. 설문조사 및 요구분석을 통해 교양교육과정 개발 시 교육수요자의 의견 반영 (개정 2025.8.11.)
- 3. 삭제 (2025.8.11.)
- 4. 삭제 (2025.8.11.)

[본조신설 2018.10.18.]

- ③ 각 학과(부) 및 FIND칼리지는 교육과정 개발 및 환류를 위하여 본 규정 제13조 및 제13조 및 제13조의2 보고서를 소정 기간 내에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해야 한다. (신설 2025.8.11.)
- ④ 우리 대학 수업의 질 제고 및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FIND핵심역량 및 전공능력 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, 그 결과는 교육과정 개발·개편 및 환류에 활용한다. 이와 관련된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부서별로 분장한다. (신설 2025.8.11.)
- 1. 역량 진단 계획 수립 및 환류 운영: 교무연구처 교육기획팀 (신설 2025.8.11.)
- 2. 역량 진단 조사 및 기초 데이터 분석 : 기획처 IR센터 (신설 2025.8.11.)

[제목개정 2025.8.11.]

- **제6조(교육과정 적용기준)** ① 모든 학생은 입학연도의 교육과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(개정 2024.7.30.)
 - ② 입학연도에 필수로 지정된 학점은 원칙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입학연도에 적용받았던 교양필수, 계열(학부)기초 및 전공필수 학점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축소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. (개정 2024.7.30.)
 - ③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이수 학점, 적용 기준 및 특이자 적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

총장이 따로 정한다. (개정 2024.7.30.)

[본조신설 2018.10.18.]

[조명변경 2019.9.11.]

[전부개정 2019.9.11.]

- 제7조(위원회 설치)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, 교양교과위원회, 전공교과위원회, 학과(부) 교과과정개발위원회, 비교과운영위원회를 둔다. (개정 2019.9.11.) [전부개정 2018.10.18.]
- 제8조(교육과정위원회) ① 교육과정위원회는 교무연구처장과 AI융합교육혁신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지역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인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교무연구처장으로 한다. (개정 2019.6.25., 2022.4.20., 2023.12.14., 2025.7.2.)
 -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.
 - ③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(개정 2024.7.30.)
 - 1. 교육과정의 편성·개편·운영에 관한 사항
 - 2. 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
 - 3. 산업계 및 사회 요구를 반영한 교과과정 편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수립
 - 4. 교양교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교양교과 운영에 관한 사항
 - 5. 비교과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비교과 운영에 관한 사항
 - 6. 교육과정 개편에 관련된 실무팀 또는 실무소위원회의 구성, 운영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
 - 7.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발주 및 연구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
 - 8. 기타 교육과정에 관한 주요 사항

[전부개정 2018.10.18.]

- **제9조(교양교과위원회)** ① 교양교과위원회는 FIND칼리지학장과 AI융합교육혁신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FIND칼리지 소속 영역별 주임교수 6인, 인문사회/이공/예체 계열을 대표하는 협력학과 전임교원 3인, 전문성을 지닌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FIND칼리지학장으로 한다. (개정 2019.6.25., 2022.4.20., 2022.6.8., 2023.12.14., 2024.7.30., 2025.7.2.)
 - ② 교양교과위원회는 FIND칼리지 교학지원팀에서 주관하며,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. (개정 2022.4.20., 2024.7.30.)
 - ③ 교양교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(개정 2024.7.30.)
 - 1. 교양교과의 방향과 교육목표에 관한 사항
 - 2. 교양과과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(교육 수요자 요구 또는 만족도 조사 포함)
 - 3. 교양교과 과정의 영역 구분, 개설학기 구분 등 교양교과 편성에 관한 사항
 - 4. 교양교과 개편에 관련된 실무팀 또는 실무소위원회의 구성, 운영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

핬

- 5. 기타 교양교과에 관한 주요 사항 [전부개정 2018.10.18]
- **제10조(전공교과위원회)** ① 전공교과위원회는 각 단과대학별로 두고, 위원은 학장, 학과(부)장을 당연적으로 하며 학생대표 2인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학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 (개정 2022.6.8., 2024.7.30.)
 - ② 전공교과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. (개정 2024.7.30.)
 - ③ 전공교과위원회는 해당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에서 주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(개정 2024.7.30.)
 - 1. 전공 교과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- 2. 전공교과의 개설 학년 및 학기의 구분 등 전공교과 편성에 관한 사항
 - 3. 학과(부) 교과과정개발위원회의 전공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
 - 4. 기타 각 학과(부) 전공교과에 관한 주요 사항

[전부개정 2018.10.18]

- 제11조(학과(부) 교과과정개발위원회) ① 학과(부) 교과과정개발위원회는 각 학과(부) 전임교원, 산업체인사 및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학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학과(부)장으로 한다. (개정 2022.6.8.)
 - ② 학과(부) 교과과정개발위원회는 각 학과(부)에서 주관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한다. (개정 2024.7.30.)
 - 1. 학과(부) 교과과정 개발 및 개편
 - 2. 학과(부) 교과과정 운영 및 모니터링
 - 3. 학과(부) 교과과정 성과 분석 및 평가(만족도 조사 및 수요자 요구도 조사)
 - 4. 기타 학과(부) 교과과정 및 비교과과정에 관한 주요 사항
 - ③ 각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장은 소속 학과(전공, 학부)의 교과과정개발위원회 위원 위촉현황과 회의실적(회의록 포함)을 관리하고 소속 단과대학 학장에게 보고한다. (신설 2022.6.8.)
 - ④ 각 학과(부)장은 교과과정개발위원회 회의 종료 후 회의결과(회의록 포함)를 소속 단과대학으로 제출한다. (신설 2022.6.8.) (개정 2024.7.30.)

[전부개정 2018.10.18.]

[조명변경 2018.10.18.]

- **제12조(각 위원회 임기 및 운영)**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학생대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(개정 2024.7.30.)
 - ②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- ③ 위원장은 교과과정 개편이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.
 - ④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 단, 필요

- 에 따라 서면결의 할 수 있다. (개정 2024.7.30.)
- ⑤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 교양교과위원회와 전공교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 및 교무위원회 심의 후 시행한다. (개정 2024.7.30.)
- ⑥ 과목명 및 학기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. (개정 2024.7.30.)

[전부개정 2018.10.18.]

- 제13조(교육과정 개발·개편) ① 교육과정 개발·개편은 4년 주기를 원칙으로 한다.
 - ② 교육과정 개발·개편 보고서란 대학 및 학과(전공)가 교육목표와 인재상에 부합하도록 FIND핵심역량(교양) 또는 전공능력(전공)을 기반으로 교과 및 비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 및 개편하기 위해 작성하는 기획 문서를 말한다.
 - ③ 교육과정 개발·개편 보고서 작성 및 컨설팅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. [전부개정 2025.8.11.]

[제목개정 2025.8.11.]

- 제13조의2(교육과정 운영 성과 분석) ① 개발·개편된 교육과정은 연 1회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, 개선함을 워칙으로 한다.
 - ② 교육과정 운영 결과·계획 보고서란 교육과정 운영의 성과와 개선사항을 분석하고, 이를 바탕으로 차기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차별 환류 중심 보고서를 말한다.
 - ③ 교육과정 운영 결과ㆍ계획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25.8.11.]
- **제14조(비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원칙)** ① 비교과과정은 중장기발전계획서 등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기본 계획과 교육혁신 계획에 부합하도록 편성하여 비교과운영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 (개정 2019.9.11.)
 - ② 비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수학습개발센터 비교과과정편성지침 및 비교과과정운영지침으로 정한다. (개정 2024.7.30., 2025.7.2.)
 - 1. 삭제 (2024.7.30.)
 - 2. 삭제 (2024.7.30.)
 - 3. 삭제 (2024.7.30.)
 - 4. 삭제 (2024.7.30.)
 - 5. 삭제 (2024.7.30.)

[본조신설 2018.10.18.]

[제목개정 2024.7.30.]

제15조(비교과운영위원회) ① 비교과운영위원회는 학생취업지원처장, 학술정보원장, AI융합교육혁신원장, 교수학습개발센터장, 심리상담 · 인권센터장, FIND-MYWAY 센터장, 국제교육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필요시 학생대표 또는 산업체 인사

- 를 위촉할 수 있다. (개정 2020.11.26., 2022.1.17., 2022.4.20., 2022.6.8., 2023.4.21., 2024.7.30., 2025.7.2.)
- ② 위원장은 AI융합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,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. (개정 2025.7.2.)
- ③ 비교과운영위원회는 학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(개정 2022.1.17., 2023.4.21., 2024.7.30.)
- 1. 비교과과정 운영 및 관리 정책 수립
- 2. 비교과과정 운영 성과 및 개선 방안 심의
- 3. 학습역량, 취·창업, 학생상담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선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비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- ④ 비교과운영위원회는 AI융합교육혁신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주관하고,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 (개정 2020.8.27., 2022.6.8., 2024.7.30., 2025.7.2.) [본조신설 2018.10.18.]

[전부개정 2020.5.14.]

- **제16조(비교과과정 개선 노력 및 환류)** ① 비교과과정 제도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하여야 한다. (개정 2024.7.30.)
 - 1. 비교과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 및 학생 요구도 조사
 - 2.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결과 작성
 - 3. 개선계획이 포함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계획 작성
 - ② 비교과과정 운영 부서장은 환류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직후 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와 개선 요청사항을 수렴하여 차기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(개정 2024.7.30.)
 - ③ 비교과과정 운영 부서장은 각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,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 학생역량강화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교내 구성원에게 공개한다. (개정 2024.7.30.)

[본조신설 2018.10.18.]

제17조(보칙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[전부개정 2018.10.18.]

[조명변경 2018.10.18.]

부칙

- (1) 이 규정은 199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- (2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"교과과정운영위원회 규정"은 이를 폐지하고, 제5조(교육과정위원회)로 변경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587, 2005.5.31)

이 규정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938, 2005.9.6)

이 규정은 2005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1063, 2006.11.13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3조(교육과정의 편성원칙) 제1항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595, 2007.6.4)

이 규정은 2007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1214, 2010.10.28)

- ① (시행일) 변경 규정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교육과정 영역의 이수구분은 2015학년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.
- ③ 기존 140학점제 적용대상자는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53, 2011.1.18.)

(시행일) 변경 규정은 201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980, 2012.7.17.)

(시행일) 변경 규정은 2012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6, 2015.01.05.)

이 규정은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351, 2015.06.05.)

이 규정은 2015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149, 2016.03.03.)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499, 2016.06.21.)

이 규정은 201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191, 2017.05.12.)

이 규정은 2017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533, 2018.10.18.)

이 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330, 2019.06.25.)

이 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471, 2019.09.11.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2조(교육과정의 구분 및 정의) 제3항, 제6조(교육과정 적용기준), 제7조(위원회설치), 제14조(비교과과정 편성 원칙)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338, 2020.05.14.)

이 규정은 202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548, 2020.08.27.)

이 규정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739, 2020.11.26.)

이 규정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411, 2021.7.15.)

이 규정은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40, 2022.01.17.)

이 규정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257, 2022.04.20.)

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332, 2022.06.08.)

이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945, 2023.04.21.)

이 규정은 202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2603, 2023.12.14.)

이 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1645, 2024.07.30.)

이 규정은 202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1468, 2025.07.02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련 지침의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지침, 내규 등은 제규정기본규정 제7 조1항에 따라 각 업무소관부서장이 개정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1695, 2025.08.11.)

이 규정은 2025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(신설 2019.09.11.) (개정 2021.07.15., 2024.7.30.)

FIND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과정 분류 체계

구분	꿈을 찾아가는 FIND 비교과과정			
핵심 역량	응용역량	통합역량	소통역량	자기발견역량
핵심 역량 정의	취·창업과 생활경 제에 구체적인 활용 도를 높일 수 있는 현장교육 중심의 역 량	학습자 개인마다의 고유한 융·복합 능 력을 키우는 통섭교 육 중심의 역량	글로벌 표현능력과 지역협동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공감교 육 중심의 역량	행복한 인생을 디자 인하는 자기동기 발 현교육 중심의 역량
하위 역량	· 전문성강화 역량 · 현장적용 역량	· 창의적문제해결 역량 · 융합적사고 역량	· 자기표현 역량 · 협동 역량	· 자기주도적학습역량· 정서 및 신체관리역량
교육 활동 내용	진로 탐색과 전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 는 학과·학년별 맞 춤형 진로지도, 전 공 전문성 및 현장 적용 능력 강화 등 의 교육활동	용합적 사고를 바탕 으로 한 창의적 문 제해결 능력을 함양 하여 개개인의 고유 한 융·복합 능력의 발현을 돕는 교육활 동	지역공동체에서 글 로벌공동체에까지 이르는 사회공동체 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 통과 협업능력 함양 을 위한 교육활동	재학 중의 심리적 건강, 인·적성 상 담 지원, 자기주도 적 학습 역량 강화, 셀프리더십 등을 위 한 교육활동